

#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자녀의 완전돌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

나. 추진근거

- (1)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, 제27조
- (2)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, 제17조
- (3)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, 제38조

다. 위탁사무

- (1) 구직, 경력단절여성 등 인적자원 모집 및 개발
- (2) 보육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연계
- (3) 구인 희망 기업(사업체) 발굴 및 구직자 연계
- (4) 취·창업 정보제공 및 상담, 직업교육훈련 등
- (5) 기타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

라. 위탁기간 : 2024년 ~ 2026년

마. 소요예산 : 527백만원(도 263.5 시 263.5) \*2024년 사업비(5개월분)

바. 사업개요

(1) 기 간 : 2024년 ~ 2026년

(2) 대 상

- 구인처 :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
- 구직자 : 경력단절, 취업희망 여성(영유아,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)

(3)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(4) 수탁기관 : 보육실, 사무실,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, 취업상담·연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과 취업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

(5) 사업내용

- 단기일자리 매칭 : \*최소 1일에서 최대 3개월의 단기 형태

오프라인	온라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구인처 모집 : 상공회의소, 관내 중소기업,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한 홍보, 모집</li> <li>· 구직자 모집 : 여성인력개발센터, 고용노동부 등 교육생내방객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, 춘하 추동한마음 등 참여자 대상 사업 안내, 모집</li> </ul> <p>⇒ 단기일자리 사업 연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플랫폼을 활용한 구인처 및 구직자 모집 홍보 (*시청·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, 워크넷 등)</li> </ul> <p>⇒ 단기일자리 사업 연계</p>

- 지원내용 : 유형 I, II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원

유형	지원대상	지원금	비고
I	출산·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(3개월 이내)	인건비 100%	*최저임금×최대8시간
II	소규모 사업장 단기인력 제공(3개월 이내)	인건비 50%	

\* 유사 중복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제외

⇒ 고용노동부 출산·육아 지원제도(육아휴직급여, 6+6 부모육아휴직제, 육아휴직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, 대체인력 지원금) ,

⇒ 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제도

- 취업상담, 교육 : 경력단절예방 사업, 취업상담, 직업능력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연계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(1)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, 제27조
- (2)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, 제17조
- (3)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, 제38조

#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사업참여자 및 전담관리자 인건비, 취업프로그램 등  
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운영을 위한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최저임금 및 일자리 규모 예상에 따라 산정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세출	527	1,207	1,207	2,941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국비	-	-	-	-
도비	263.5	603.5	603.5	1,470.5
시비	263.5	603.5	603.5	1,470.5
민간	-	-	-	-
기타	-	-	-	-
합계	527	1,207	1,207	2,941

5. 부대의견 : 운영 여건에 따라 예산규모는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가족보육과 여성정책팀 주현철(☎ 480-6537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연 도	항 목	계(천원)	산 출 기 초
2024	합 계	527,000	
	인건비	30,46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담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월급여,활동수당 2,200,000원×5개월×2명</li> <li>- 명절수당 200,000원×1회×2명</li> </ul> </li> <li>• 실무책임자 수당 500,000원×5개월×1명</li> <li>• 4대보험 등 기타경비 5,562,660원</li> </ul>
	운영비	2,6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요금, 수용비 등 2,600,000원</li> </ul>
	사업비	493,93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참여자 인건비 지원(300명) 473,280,000원</li> <li>• 취업프로그램, 직업교육훈련 등 20,657,340원</li> </ul>
2025	합 계	1,207,000	
	인건비	72,9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담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월급여,활동수당 2,200,000원×12개월×2명</li> <li>- 명절수당 200,000원×2회×2명</li> </ul> </li> <li>• 실무책임자 수당 500,000원×12개월×1명</li> <li>• 4대보험 등 기타경비 13,314,640원</li> </ul>
	운영비	6,2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요금, 수용비 등 6,240,000원</li> </ul>
	사업비	1,127,84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참여자 인건비 지원(700명) 1,094,460,000원</li> <li>• 취업프로그램, 직업교육훈련 등 33,385,360원</li> </ul>
2026	합 계	1,207,000	
	인건비	72,9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담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월급여,활동수당 2,200,000원×12개월×2명</li> <li>- 명절수당 200,000원×2회×2명</li> </ul> </li> <li>• 실무책임자 수당 500,000원×12개월×1명</li> <li>• 4대보험 등 기타경비 13,314,640원</li> </ul>
	운영비	6,2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요금, 수용비 등 6,240,000원</li> </ul>
	사업비	1,127,84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참여자 인건비 지원(700명) 1,094,460,000원</li> <li>• 취업프로그램, 직업교육훈련 등 33,385,360원</li> </ul>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4조(경제활동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·채용·임금·교육훈련·승진·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·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·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7조(여성 인적자원의 개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7조(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혼인·임신·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,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
2.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,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
3. 취업·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
4. 직업교육훈련,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
5.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
6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, 기

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
7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□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8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, 위탁의 방법·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소 관 부 서		가족보육과
입 안 자	과 장	황 은 채
	팀 장	백 은 영
	담 당 자	주 현 철 (480-6537)